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에콰도르의 유보목록

에콰도르의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에콰도르의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에콰도르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않는 에콰도르의 기존의 조치
 - 1) 제10.2조(내국민 대우)
 - 2) 제10.3조(최혜국 대우)
 - 3)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에콰도르가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0.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다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바.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의 비한정적 목록을 적시한다.

4. 제1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5. 제2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6. 부록 III-1은 양 당사국이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7. 에콰도르의 경우, 유한회사는 회사법 제5절 “유한회사(De la Compañía de Responsabilidad Limitada)”에 따라 구성된 실체를 지칭하고 주식회사는 회사법 제6절 “주식회사(Compañía Anónima)”에 따라 구성된 실체를 지칭한다.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에콰도르의 약속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제10.9조제1항다호는 법적 형태의 특정 유형에 대하여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관련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절

| | |
|-------|----------------------------------------------------------------------------------------------------------------------------------------------------|
| 1.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증권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증권예탁소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60조 통화, 금융, 증권 및 보험 결의 법전 제2권 주식시장 제11편(가치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예탁소) 제1절(설립 및 운영허가) |
| 유보내용 | 증권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증권예탁소에 대한 주식회사에서, 각 주주는 수권자본금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 법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의 공공 분야 기관은 예외로 한다. |

| | |
|-------|---------------------------------------------------------------------------------------------------------------------------------------------------------------------------------------------------------------------------------------------------------------------------------------------------------------------------------------------------------------------------------------|
| 2.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모든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14.1.f조 · 제162조 · 제179조 · 제194조, 제2권 |
| 유보내용 | <p>금융활동을 수행하거나 대표사무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에콰도르 내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금융기관은 국가 통제 기구로부터 사전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지점은 에콰도르 내에 사전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p> <p>외국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는 자신의 고객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다. 외국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는 에콰도르 내에서 해외에 예치할 기금 또는 예치금을 모집하거나, 에콰도르 내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증권을 모집 또는 투자할 수 없다.¹</p> <p>증권 시장 기관에서 지점은 허용되지 않는다.</p> <p>금융정책규제위원회는 금융, 증권 및 보험 분야에서 새로운 기관의 구성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p> |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외국금융기관은 은행 그리고 제10.19조(정의)의 마호부터 카호까지에 열거된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서비스기관을 지칭한다.

| | |
|-------|------------------------------------------------------------------------------------------------------------------------------------------------------------------------------------------------------------------|
| 3.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모든 분야 |
| 관련의무 |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389조 · 제428조 · 제434조, 제2권 제44조 · 제56조 · 제97조 · 제98조 · 제176조, 제3권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 유보내용 | 민간금융기관 ² 및 금융서비스기관 ³ 은 주식회사로 은행감독원에 설립되고 부수서비스기관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설립된다.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에 대한 동일한 규정이 보험 및 재보험 회사, 보험중개회사, 증권거래소, 증개회사, 펀드 관리사 및 신탁사, 증권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증권예탁소와 위험평가회사에 적용된다. |
| | 예외적으로 그리고 은행감독국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 분야의 기관이 자본을 소유하는 부수서비스회사는 국가 금융 시스템 외부에 있는 다른 형태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간금융기관은 은행을 포함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기관은 예금 보관소, 외환거래소 및 주택담보대출유통시장개발회사를 포함한다.

| | |
|-------|-----------------------------------------------------------------------------------------------------------------------|
| 4.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신용조회서비스 |
| 관련의무 |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
| | 국경 간 무역(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판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357조 |
| | 신용데이터등록서비스 및 신용정보기관 결의 제485-2018-F호(판보 제408호, 2019. 1. 17.) |
| 유보내용 | 신용조회서비스는 은행감독원 그리고 에콰도르 내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구성된 법적 기관에 의하여 제공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유일한 목적이 신용조회서비스의 제공인 회사는 이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 |

| | |
|-------|---------------------------------------------------------------------------------------------------------------------------------------------------------------------------------------------------------------------------------------------|
| 5.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모든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
| |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
| | 국경 간 무역(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237조, 제2권 제176조 통화, 금융, 증권 및 보험 결의 법전 제2권(주식시장) 제16편(위험평가) 제2장(위험평가) 제2절(기준 및 범위) 그리고 제4편(주식시장의 공공 등록소 등록을 위한 총칙) 제2장(민간분야 발행자) 제2절(주식시장의 공공 등록소 등록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정보의 전송) |
| | 회사, 증권 및 보험 감독원 결의 제SCVS-INS-2016-002호 |
| 유보내용 | 위험평가는 국내법인 또는 외국 위험평가회사, 또는 서로 제휴하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경험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명성을 갖추고 통제기구로부터 적절하다고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
| | 외국 위험평가기관 또는 국내 보험 및 재보험 회사와의 제휴기관은 국제적으로 최소 3개국에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 평가에 중요하게 참여하였음을 등록하고, 모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평가를 받 |

있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의 위험평가는 “위험평가기관 명부”에 등록된 법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에콰도르 증권시장에서 해외 발행 증권의 2차 공모 시, NRSRO(국가 공인신용평가기관)과 같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위험 평가기관이 그러한 발행에 대해서 한 위험평가는 수용될 것이다.

에콰도르 증권시장에서 최초 공모를 하는 현지 발행자로 인정되는 다 자간 발행자의 경우, 동일한 규범이 적용될 것이다.

외국 발행자의 증권이 등록되고 거래되는 에콰도르 증권거래소는 주식 발행 국가의 거래소, 또는 그 외국 발행자의 증권이 등록된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증권거래소나 기관과의 협정에 서명할 의무가 있다.

6. 분야 보험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3권 제17조

유보내용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수석 이사 또는 대리 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보험체계를 구성하는 것의 이사회 구성원, 관리자,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7. 분야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⁴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3권 제66조

유보내용

에콰도르 영역 내에서, 국가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보험회사와 다음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 피보험자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에콰도르에 있는 경우, 개인보험

나. 국가 영역 내 소재한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 및 추가적인 위험 보험

다. 에콰도르에 등록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선체/기체 보험

라. 국가 내로 수입되는 제품 또는 상품의 운송에 대한 보험

마. 에콰도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민사책임보험, 그리고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0-가와 이 유보항목에 규정된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부속서 10-가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바. 에콰도르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그 밖의 보험. 에콰도르 영역 내 비거주자가 입원 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들의 인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영역 밖에서 계약하는 보험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 내에서 영업하도록 인가된 보험회사가 특정 위험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회사증권보험감독원의 사전인가를 받은 이해당사자는 해외에서 그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 |
|-------|--------------------------------------------------------------------------------------------------------------------------------------------------------------------------------------------|
| 8.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증권 |
|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10.3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2권 제46조 |
| 유보내용 | 증권거래소의 주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거래소의 기발행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축적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지역 통합의 증진과 에콰도르 주식시장, 증권거래소 또는 규제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증권보험감독원으로부터 그러한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퍼센트까지 이 참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

| | |
|--------------|---------------------------------------------------------------------------------------------------------------------------------------------------------------------------------------------------------------------------------------|
| 9.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펀드 및 신탁 관리자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 국경 간 무역(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2권 제77조 |
| 유보내용 | <p>에콰도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는 국가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펀드 매니저 회사를 통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상 펀드와 펀드 매니저 회사는 수탁 책임을 갖고 각각의 대표 계약에 서명해야 하고 회사증권보험감독원의 정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p> <p>에콰도르에서 구성된 펀드와 신탁 관리자만이 국제 펀드를 관리 또는 대표하도록 인가된 기관이 될 것이다.</p> |

| | |
|--------|--------------------------------------------------------------------------------------------------------------------------------------|
| 10.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투자은행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2권 제59조 이후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첫 번째 조 |
| 유보내용 | <p>중개회사(casas de valores) 와 에콰도르사회보장기관은행만이 투자은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은행 활동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투자 및 금융 옵션을 찾는 전문적인 활동이다.</p> |

제2절

| | |
|--------|------------------------------------------------------------------------------------------------------------------------------------------------------------------------------------------------------------------------------------------------------------------------------------------------------------------------------------------------------------------------------------------------------------------------|
| 1.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모든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유보내용 | 에콰도르는 다음의 하나 이상의 공공금융기관에 혜택 또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없이 부여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서민연대금융공사(Corporación Nacional de Finanzas Populares y Solidarias) 또는 그 승계기관 나. 국립금융공사(Corporación Financiera Nacional B.P) 또는 그 승계기관 다. 에콰도르사회보장기관은행(Banco del 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또는 그 승계기관 라. 에콰도르개발은행(Banco de Desarrollo del Ecuador B.P)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마. 뱅에콰도르(BANECUADOR B.P) 또는 그 승계기관 |
| 기준의 조치 |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386조 |

| | |
|--------|-----------------------------------------------------------------------------------------------------------------------------------------------------------------------|
| 2.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모든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유보내용 | 예과도르는 다음과 같은 서민연대 금융분야 기관의 모사무소 또는 운영사무소 개소에 제한을 설정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저축 및 신용협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연대단체, 공동 은행 및 펀드, 저축 펀드 및 출신국가에서 고려되고 이 분야에 해당하는 그 밖의 법적 형태 또는 명칭 |
| 기준의 조치 | 서민연대금융 분야와 초소형 · 소형 · 중형 생산 단위의 서비스 계획은 그러한 것들이 서민연대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한도에서 국가로부터 차등대우 및 특혜대우를 받을 것이다. |
| | 예과도르 공화국 헌법[관보 제449호(2008. 10. 20.) 제311조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160조 · 제163조 |

| | |
|-------|-------------------------------------------------------------------------------------------------------------------------------------------------------------------------------------------------------------------------------------------------------------------------------------------------------------------------------------------------------------------------------------------------------------------------------------------------------------------------------------------------------------------------------------------------------------------------|
| 3.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모든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8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유보내용 | <p>기존의 국영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자본이나 자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분 시, 에콰도르는 자본 또는 자산에 대한 그러한 지분의 소유권과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또는 결과적으로 국영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그들의 투자의 권리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이전 또는 처분에 대하여, 에콰도르는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처분 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 유보에서 기술된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유지되거나 채택되는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시행 중인 조치로 간주된다. 나. 국영기업이란 에콰도르 또는 합작회사가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통하여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을 말하고, 국영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의 목적으로 |

만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 | |
|-------|------------------------------------------------------------------------------------------------------------------------------------------------------------------------------------------------------------------------------------------------------------------------------------------|
| 4. 분야 | 금융서비스 |
| 하위분야 | 보험 및 재보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 국경 간 무역(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유보내용 | <p>에콰도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보험 및 재보험 회사, 중개업자 및 보험 부수 서비스 제공자는 에콰도르 법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등록하고 자신의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p> <p>에콰도르는 국가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소유한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에 공공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할당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외국 보험 및 재보험 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 및 재보험 회사의 중개업자는 대표사무소를 개소할 수 없다.</p> |

부록 III-1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는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도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 (1) 민간금융체계 내의 기관과 그 기관의 이사는 에콰도르 시장에 존재하거나 활동하는, 금융 분야 밖의 사업체 또는 상업회사의 주식 및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는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 기업 및/또는 가족사업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합산하여 금융기관 주식 자본의 2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금융 분야 밖의 사업체 또는 상업회사의 주식 및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10조(예외)에 따라, 에콰도르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에콰도르가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제10.10조(예외)를 저해함이 없이, 에콰도르가 한국의 부록 III-1에 규정된 조치와 동등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자국의 법령에서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령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도 원래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